

감비아 (Gambi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사회보험 적용대상	- 사회보험 : 준정부기관 근로자 및 민간부문 근로자 당연적용 - 적립기금 : 민간부문 근로자	- 사회보험 : 준정부기관 근로자 - 적립기금 : 민간부문 근로자	사회보험 민간부문 근로자 임의적용 대상으로 변경
보험료율 (사회보험 / 적립기금)	15% / 15%	15% / 15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없음	없음	-
노령연금 수급요건	60세, 100개월	60세, 100개월	-
노령연금 지급율	75% 연금, 25% 일시금	75% 연금, 25% 일시금	-
일시금	-	노령청산금 조기 청구 가능	노령조기청산금 도입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78년(사회보험); 1981년(적립기금), 1982 시행
- 현행법 : 2015년(사회보장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 및 적립기금

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- 당연적용 : 준정부기관 근로자
 - 임의적용 : 일부 민간부문 근로자
 - 적용제외 : 임시직 근로자, 자영자
- 적립기금
 - 당연적용 : 민간부문 근로자
 - 임의적용 : 자영자 및 외교사절단 파견 및 국제기구 근무 자국민
 - 적용제외 : 임시직 근로자
- 특별제도 : 특정 공무원 및 군인

4

재원조달

- 가입자(근로자)
 - 사회보험 : 없음
 - 적립기금 : 기본급의 5%, 60세 이상 가입자는 부담금 없음
 - 보험료 부과 상하한 소득제한은 없음
- 자영자
 - 사회보험 : 해당 없음
 - 적립기금 : 매월 보험료 납부
 - 보험료 부과 상하한 소득제한은 없음
- 사용자
 - 사회보험 : 임금지급액의 15%. 60세 이상 가입자는 부담금 없음
 - 적립기금 : 임금지급액의 10%
 - 보험료 부과 상하한 소득제한은 없음
- 정부
 - 사회보험 : 없음, 사용자로서 기여
 - 적립기금 : 없음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 (사회보험) :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며 60세 도달
 - 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이며 45세 도달
 - 노령청산금 (사회보험) : 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이나 10년 미만이며 60세 도달
 - 조기청산금 : 해고되었거나 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타의적으로 사직한 경우, 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일 시 연령 무관
 - 연기청산금 : 보조금 지급은 연기 가능
 - 노령급여 (적립기금) : 60세 또는 자발적 퇴직의 경우 46세~54세 (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 및 6개월 동안 실직 상태) 또는 55세~59세 (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 및 3개월 동안 실직 상태)
- 장애연금
 - 장애연금 (사회보험) : 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이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
 - 의료위원회에서 장애 심사

- 장애청산금 (사회보험) :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나 10년 미만이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
 - 의료위원회에서 장애 심사
 - 장애급여 (적립기금) :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이 인정된 경우
 - 부분장애 : 일시적인 부분적 근로능력 상실이 인정된 경우 감액 급여 지급
 - 의료위원회에서 장애 심사
- 유족연금
- 유족급여 (사회보험) : 사망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5년인 경우, 지명된 유족에게 지급
 - 유족급여 (적립기금) : 지명된 유족에게 지급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연금
- 노령연금 (사회보험) : 사용자 납부 보험료 총액의 75%는 연금으로, 나머지 25%는 일시금으로 지급
 - 조기연금 : 수급 개시 연령에 따라 감액
 - 노령청산금 (사회보험) : 사용자 납부 보험료 총액의 25% 또는 가입자 연소득의 100% 중 더 높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 - 조기청산금 : 일시금 지급
 - 연기청산금 : 노령청산금과 동일한 산정방식 적용
 - 노령급여 (적립기금) :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 총액에 가산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(급여액의 일부는 연금으로 수령 선택 가능)
 - 55세 또는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며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고 실직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85% 지급
 - 45~54세 사이에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며 실직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70% 지급
- 장애연금
- 장애연금 (사회보험) : 사용자 납부 보험료 총액의 75%는 연금으로, 나머지 25%는 일시금으로 지급. 단, 가입자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전액 일시금 지급 가능
 - 장애청산금 (사회보험) : 일시금 지급
 - 장애급여 (적립기금) :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 총액에 가산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 - 부분장애 : 판정된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부분적 장애급여 지급. 의료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
- 유족연금
- 유족급여 (사회보험) : 사망자 연소득의 2배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, 급여액은 지명된

유족 간에 사망자가 지정한 비율대로 분할

- 유족급여 (적립기금) :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납부 총액에 가산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
7

관리운영기관

- 사회보장및주택금융공사(Social Security and Housing Finance Corporation)
 - 사회보험 및 적립기금 운영
 - <http://www.sshfc.gm>

<2019년 ISSA 자료>